

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(제216조의3제2항 관련)

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		자료집중기관
1.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		국가보훈부, 보건복지부
2. 제216조의3제1항제1호·제1호의2· 제2호·제5호·제5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		전국은행연합회, 「보험업법」 제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, 「보 험업법」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험협회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62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, 「새마을금고법」 제54조에 따른 중앙회,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25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61조에 따 른 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 제93조 에 따른 중앙회, 「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83조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, 「우정 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
3.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		보건복지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4. 제216조의 3제1항제4 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의 2에 따른 교육비	가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 른 유치원(국립유치 원은 제외한다) 또는 「고등교육법」·특 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	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	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, 「유아 교육법」에 따른 국 립유치원 및 「영유 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	교육부
	다. 삭제 <2024. 6. 25.>	
5.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육비	고용노동부	
6.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 납입액	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	
7.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등 사용금액	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62조에 따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	